

의안번호	2208621
의 퇴 인	홍기원의원
회 답 일	2025.3.26.
추 계 번호	25D0990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 및 청산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남북경제협력사업자등에 대한 피해 보상 심의 위원회)	- 남북경제협력사업자등¹⁾에 대한 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 소속으로 남북경제협력사업자등에 대한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를 둠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은 통일부·법무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학교에서 남북 경제협력사업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남북경제협력사업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남북경제협력사업자등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6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4조(보상금)부터 제9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의 지급)까지	-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위한 보상금을 지급하며 보상금의 지급기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함 - 보상금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함 -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함 -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함 - 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지체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함	의무규정
3	안 제11조(조세 면제)	보상금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의무규정

1) 금강산 관광사업, 5·24조치로 인한 피해기업,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개성공단 협력업체를 말함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조(남북경제협력사업자등에 대한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4조(보상금)부터 제9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의 지급)까지	
3	안 제11조(조세 면제)	

2. 상세 사유

□ 남북경제협력사업자등에 대한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3조)

- 제정안은 남북경제협력사업자등에 대한 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 소속으로 남북경제협력사업자등에 대한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함에 따라 위촉위원의 회의참석수당 등 운영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위원회 운영비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위촉위원 수, 회의 개최 횟수, 안전심의비 등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현시점에서 회의 개최 횟수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 보상금, 보상금의 지급신청, 보상금의 심의와 결정, 결정서 송달, 재심의,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의 지급(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 제정안은 국가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위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현시점에서 향후 위원회에서 결정될 피해자 수 및 보상금액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 참고로, 통일부는 2018년에 남북 경협기업²⁾·교역기업³⁾·금강산기업⁴⁾ 대상으로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업 신고액 중 회계법인 증빙 검토를 거쳐 피해규모 3,984억원을 확인하여 피해지원기준에 따라 총 2,290억원을 지원하였음
 - 또한 2016년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 대상으로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업 신고액 중 회계법인 증빙 검토를 거쳐 피해규모 7,861억원을 확인하여 피해지원기준에 따라 총 6,775억원을 지원하였음

[표 1] 경협·교역·금강산 기업 현황 및 피해 규모

구 분		경협기업	교역기업	금강산기업	계
전 체		42개사	957개사	53개사	1,052개사
'18년 실태조사	신고	18개사	77개사	46개사	141개사
		2,054억원	1,882억원	3,740억원	7,676억원
	확인	15개사	39개사	39개사	93개사
		1,049억원 (투자자산 743억원, 유동자산 306억원)	622억원 (투자자산 7억원, 유동자산 615억원)	2,313억원 (투자자산 2,173억원, 유동자산 140억원)	3,984억원

자료: 통일부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경제협력사업 승인 기업(여기서는 개성 및 금강산지역 협력사업 승인 기업은 제외)

3) 5.24조치 이전 2년('08.6~'10.5) 간 반출·반입 실적이 있는 기업

4) 금강산관광 투자실적 인정 기업(「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금강산 지역 경제협력사업 승인 기업 45개사 포함)

[표 2] 경험·교역·금강산 기업 피해지원 현황

유 형	피해신고		피해확인		지원	
	기업 수	금액	기업 수	금액	기업 수	금액
투자자산 (토지, 건물 등)	141개사	4,750억원	93개사	2,923억원	93개사	393억원
유동자산 (원부자재 등)		2,926억원		1,061억원		846억원
기업운영관리경비		—		—	567개사	209억원
특별대출		—		—	258개사	842억원
계		7,676억원		3,984억원		2,290억원

자료: 통일부

[표 3] 개성공단 기업 현황 및 피해 규모

구 분		기업 수	금액	비고
전 체		303개사 (입주 125, 협력 178)	—	협력업체 중 한전 등 지원기관 13개사 포함
'16년 실태조사	신고	205개사	9,649억원	한전 등 11개 지원기관 피해 신고금액(1,046억원) 제외
	확인	225개사	7,861억원	

자료: 통일부

[표 4] 개성공단 기업 피해지원 현황

유 형	피해신고		피해확인		지원	
	기업 수	금액	기업 수	금액	기업 수	금액
투자자산 (토지, 건물 등)	250개사	5,731억원	225개사	5,118억원	225개사	3,980억원
유동자산 (원부자재 등)		2,442억원		1,969억원		1,760억원
위약금		1,100억원		633억원		—
개성현지 미수금		376억원		141억원		—
근로자 위로금 (개성공단 주재원 월 평균 임금(286만원) 6개월분 기준으로 고용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		—	—	124억원
기업운영관리경비		—		—	124개사	31억원
특별대출		—		—	('16)123개사 ('22)41개사	880억원
계		9,649억원		7,861억원		6,775억원

자료: 통일부

□ 조세 면제(안 제11조)

- 제정안은 보상금에 대하여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재정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현시점에서 향후 위원회에서 결정될 피해자 수 및 보상금액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재정수입 감소분을 추계하기 곤란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보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강아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아름	02-6788-4664	krm7839@nabo.go.kr